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 제4선거구 출신 유만희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후손 중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및 기초연금수급자에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가구에만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국가보훈처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급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